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270호(號) 1934(昭和 9)년 8월 3일 금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404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38호(號)(조선 내 철도·궤도 및 항로
간 여객 및 수·소하물 연대운송규칙[朝鮮內鐵道·軌道及航路間旅客及手·小荷物連帶運送規則])
중(中) 1934(昭和 9)년 8월 10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4(昭和 9)년 8월 3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11조(條)제1항(項)을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4세[年] 미만(未滿)의 소아(小兒)는 무임(無賃)으로 함. 단(但) 북일본기선주식회사(北日本
汽船株式會社) 항로(航路)에 있어서는 1인(人)에 한(限)함.